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09245 |
| 의 뢰 인 | 한민수의원 |
| 회 답 일 | 2025.4.3. |
| 추계번호 | 25D1774 |

#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## 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6조(국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국민소환투표 홍보·계도) | 국가 등은 국민소환투표권자가 국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·도화·시설물·신문·방송 등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 참여·투표방법,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·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| 2 | 안 제8조(국민소환투표의 청구) |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「공직선거법」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| 3 | 안 제28조(국민소환투표관리경비) | 국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,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국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함 | 의무규정 |
| 4 | 안 제30조(국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) |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소환투표 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, 사이버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| 5 | 안 제32조(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) |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범죄 관련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
# 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미첨부 근거 규정 |
|---|---|---|
| 1 | 안 제6조(국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국민소환투표 홍보·계도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2 | 안 제8조(국민소환투표의 청구) | |
| 3 | 안 제28조(국민소환투표관리경비) | |
| 4 | 안 제30조(국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) | |
| 5 | 안 제32조(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) | |

## 2. 상세 사유

❑ 국회의원 국민소환투표 실시(안 제6조 등)

○ 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「대한민국헌법」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,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○ 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소환투표 실시에 따른 준비, 관리, 투·개표 절차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○ 다만, 현시점에서 국민소환투표 청구 및 실시 횟수,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될 대상자 수, 투표인의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- 참고로,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회 실시 비용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최근 실시한 전주시을국회의원 재선거 비용은 다음과 같음

[표] 전주시을국회의원 재선거 비용(2023.4.5.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액 | 이·전용등 | 집행액 | 불용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선거관리일반 | 118 | - | 149 | △31 |
| 선거운동관리 | 116 | 27 | 140 | 3 |
| 사전투표관리 | 229 | 55 | 274 | 11 |
| 투표관리 | 198 | 128 | 322 | 4 |
| 개표관리 | 99 | 21 | 114 | 6 |
| 계도홍보 | 80 | 1 | 81 | - |
| 위법행위 예방단속 (공정선거지원단,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) | 130 | - | 129 | 1 |
|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조사 | 33 | △3 | 20 | 10 |
| 인터넷선거보도심의 | 12 | - | 11 | 1 |
| 선거방송토론관리 | 32 | - | 32 | - |
| 정책선거 | 6 | - | 3 | 3 |
| 선거여론조사심의 | 15 | - | 13 | 2 |
| 당내경선 | 21 | - | 1 | 20 |
| 보전비용 | 305 | 3 | 308 | - |
| 합 계 | 1,394 | 233 | 1,597 | 30 |

자료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# 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# Ⅳ. 작성자

❑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보 | 과장 |
|---|---|---|
| 행정비용추계과 | 이미연 | 김안나 |

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이미연 | 02-6788-4661 | mylee@nabo.go.kr |